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73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규모 : 지하 3층, 지하 5층(대지 6,488㎡, 연면적 22,519㎡)
 - 지원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위치도



건물현황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여성, 가족, 보육, 돌봄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돌봄 지원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다. '20년 소요예산(안) : 14,506,490천원

라. '20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6,912,144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7,594,346천원

마.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서울 가족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김진영(☎ 2133-5031)